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5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곽상언·강경숙·서미화

한창민 · 김재원 · 박균택

김종민 · 최기상 · 김준형

김원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 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00분 의 15를 별도로 마련된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제2조, 제25조의2 신설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정신탁계좌"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하기 위한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된 계좌를 말한다.

제2장제2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정신탁계좌 개설 등)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법정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법정신탁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법정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친권자등은 제2항에 따라 법정신탁계좌에 예치된 대중문화예술 용역보수(이하 이 조에서 "법정신탁계좌예치금"이라 한다)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업이나 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법정신탁계좌의 신고 및 운영, 법정신탁계좌예치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정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신탁계좌예치금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신탁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1. "법정신탁계좌"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
	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용
	역보수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
	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하
	기 위한 해당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로서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된 계좌를 말한다.
<u><신 설></u>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정
	신탁계좌 개설 등)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대중문
	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법정신탁계좌를 개설하
	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신고하고, 해당 법정신탁계 좌에 관한 정보를 대중문화예 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 는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10 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을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법정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한 다.

③ 친권자등은 제2항에 따라 법정신탁계좌에 예치된 대중문 화예술용역보수(이하 이 조에 서 "법정신탁계좌예치금"이라 한다)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 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업이나 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법정 신탁계좌의 신고 및 운영, 법정 신탁계좌예치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 설></u>

<신 설>

3. (생략)

② (생략)

제40조(벌칙) ①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게 지급하는 대중문화예술용

2의3.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신탁계좌예치금을 사용한 자

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자

역보수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이상을 법정신탁계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